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용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963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7월 26일 발 의 자:김용호, 김길영, 김춘곤, 김형재, 남창진, 박성연, 박칠성, 송도호, 이상욱,

> 정진술, 한 · 신 의원(11 명)

찬 성 자: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민병주, 박 석, 박춘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 이용균, 이원형, 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

허 후, 홍국표, 황철규
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○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동차, 충전시설, 전용주차구역,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정의함. (안 제2조)

- 나.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 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책무를 부여함. (안 제3조)
- 다.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토록함. (안 제4조)
- 라.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함. (안 제5조)
- 마.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- 바. 시장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전기자동차"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- 2. "충전시설"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3. "전용주차구역"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.
- 4. "안전시설"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.

- 5. "관계인"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화재 예방 및 대응)**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 - 1.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
 - 2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
 - 3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
 - 4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
 - 5.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5조(안전시설 설치 기준)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 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1. 물막이판
 - 2. 질식소화덮개
 - 3.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

- 4. 충수용 급수설비
- 5.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
- 6.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- 제6조(안전시설 지원)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 방을 위하여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 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- 1.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·방지 기능 탑재
 - 2.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
 - 3.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.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 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

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, 충전시설 관리 주체,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